

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-44호

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안내(2차)

성 명: 불법 건축물 소유자 귀하

주 소: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산1번지 내

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산 1번지 내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어
우리관리소 산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
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**2019년 9월 20일까지 자진철거** 할
것을 안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수원
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
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
드립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현황사진
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산1	불법시설물	주택 1채 등	

2019년 8월 21일

수원국유림관리소장

